

# 에이전시理論과 會計監査에 關한 研究

## A Study on the Agency Theory and Accounting

孔 海 永\*

### 1. 序 言

에이전시理論은 委任者가 代理人의 行動을 직접 관찰할 수 없어 야기되는 情報의 不均衡現象과 不確實性에 의한 非效率性을 제거하고 파레토적 最適補償契約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稀少資源의 配分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資源의 效率적인 配分을 위하여 會計學의 새로운 研究分野로서 에이전시理論은 會計現象을 설명해주며 會計問題를 인식하는 洞察力을 제공해준다.

에이전시理論에서 監査는 委任者와 代理人간에 情報의 不均衡狀態를 해소하기 위한 監視裝置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원래의 代理人, 즉 企業組織의 經營者는 委任者인 所有主에 비하여 더 많고 유리한 情報를 수집·觀察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특히 監査業務의 수행과정에서 에이전시理論은 監査人의 行動樣態를 포괄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機會를 제공해준다. 다시말해서 經濟的 代理人으로서 監査人의 特定業務와 관련하여 선택하는 監査戰略에 대하여 그러한 戰略의 배경을 설명하고 戰略의 變更을 예측하여 監査人의 意思決定에 대한 基本行動原理와 理論的 背景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므로 파레토적 最適補償計劃을 수립하게 한다.

本 論文의 目的은 에이전시理論에서 基本的인 파레토적 最適補償契約이 어떻게 성립되며 다른 契約보다 우월하기 위하여 어떠한 條件들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所有主-經營者모델에 經濟的 代理人으로서 監査人을 추가하여 각각의 期待效用을 最大化하는 補償契約形態를 분석하여 모델화 하는데 있다.

本 研究의 範圍는 복잡하고 다양한 經濟環境에 따라 利益志向的인 經濟組織에서, 지배적인 期待效用의 最大化 契約에 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所有主-經營者, 所有主-經營者-監査人간의 最適補償契約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II에서는 에이전시理論의 基本概念으로서 所有主-經營者의 最適補償契約의 基本的인 모델을 설정하고, III에서는 監査의 必要性和 經濟的 代理人으로서 監査人의 役割을 설명하고 특히 소유주-경영자-감사인 모델을 설정하여 분석한다. IV에서는 에이전시모델의 限界點과 改善方向을 살펴보았다.

### 2. Agency 理論의 基本概念

에이전시理論은 단지 자기 자신의 利益에 관심을 가지는 企業 構成員간의 관계에 관련된 理論이다. 에이전시 모델에서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개인(들)(the principal(s))이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사람(들)(the agent(s))에게 責任을 위양할 목적으로 고용한다. 각각의 權限과 責任은 상호 일치된 契約을 근거로 결정된다. 에이전시理論의 研究는 企業의 效率性和 企業과 관련된 利害關係者(構成員)간의 契約의 체결과 利害關係에 관심을 둔다. 에이전시모델은 企業의 雇傭契約 締結이 企業의 관리회계 정보시스템에 의해 제시된 成果評價(the performance evaluation information)가 최적인 函數가 되게해준다. 나아가 에이전시모델은 부분적으로 제시된 情

\*啓明大學校 博士課程, 啓明大學校講師

접수: 1989. 8. 8.

報를 이용하여 個人으로 하여금 最適適合한 行動을 선택하게 해준다.<sup>1)</sup>

에이전시理論은 企業組織 혹은 其他 組織을 生産要素들 간의 契約關係(a set of contract among gaetors of production)로 파악할 때 이들 個別 生産要素가 자기 자신의 利益 最大化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연구하는 理論이다.<sup>2)</sup>

예를 들면 企業組織에서 所有主와 經營者의 관계에서 所有主는 委任者이며, 經營者는 하나의 代理人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契約關係는 또한 最高經營者와 中間經營者, 所有主와 監査人의 關係에서도 성립하게 된다.

委任者—代理人 關係에서 前者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利益을 최대화하는 것이 目標이며, 後者인 代理人 또한 自身の 이익을 추구하려 할 것이다. 즉 主人과 代理人의 利益을 最大化하는 것이 궁극적인 目標가 되는데 이러한 狀態를 파레토최적상태(pareto optimality)라고 하며, 이는 最適補償契約(optimal incentive contract)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最適補償契約이란 委任者의 立場에서 볼때, 代理人이 自身の 利益을 最大化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스런 努力水準을 투입하도록 유도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노력은 곧 委任者의 몫을 最大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설계된 계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에이전시理論의 중요한 基本概念으로서 一般的 假定, 最適補償契約의 基本模型, 道德的危險과 觀察可能性, 危險分擔과 補償契約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2.1 에이전시理論의 一般的 假定

에이전시理論과 關連한 最適補償契約모델은 설계할 경우, 同一 集團의에서도 危險에 대한 態度, 經驗, 富, 教育 등이 同質의이지 못하므로, 다음과 같은 假定下에 理論이 전개된다.<sup>3)</sup>

(1) 모든 個人은 危險回避型(risk averse)이거나 危險中立型(risk neutral)의 效用函數를 가지며, 이러한 期待效用을 最大化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또한 모든 個人은 일을 싫어하고, 보다 적은 노력으로 보다 큰 效用이나 補償을 얻고자 한다.

(2) 委任者는 代理人을 고용하고, 代理人은 外生的이고, 確率的인 狀態 즉 不確實性下의 與件의 狀態(the state of nature)에서 行動을 선택하게 되며, 이에 따라 成果가 결정된다. 이때 모든 個人의 期待效率은 주관적이며 서로 다를 수도 있다.

(3) 委任者와 代理人은 相互間의 合議下에 산출된 成果를 어떻게 配分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補償契約을 체결한다. 이때 補償函數를 결정하는 變數는 委任者와 代理人이 相互 혹은 각각 관찰 가능한 변수이어야 한다. 兩者가 확인할 수 있는 變數는 통상적으로 두 사람이 직접 관찰할 수 있거나, 아니면 自動報告裝置 혹은 代理人이 委任者에게 成果를 보고하는 등의 제반 報告節次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4) 委任者와 代理人의 期待效用은 補償契約의 函數로서 표시된다. 期待值란 外生的 不確實性(uncertainty)에 대한 예상치를 말하며, 또한 代理人의 生産活動이나 報告活動과 관련하여 最適行動을 선택할 때 制約條件으로 작용한다.

(5) 履行 가능한 補償契約이 되기 위해서는 파레토最適狀態에 있는 契約이어야만 한다. 즉 相對方의 效用을 감소시키지 않고서 자기의 效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또다른 契約이 존재할 수 없는 狀態를 말한다. 서로 상충되는 利害關係를 가진 개인들이 相對方의 富를 희생시키지 않고 각자의 效用을 最大限으로 만족시키는 補償契約을 설정하여야만 그 補償契約은 相互 준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假定은 에이전시理論이 지향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며 최종적인 目標에 해당한다.

## 2.2 最適補償契約의 基本모델

복잡하고 다양한 諸 經濟環境에서 問題를 단순화하기 위해 企業의 經營活動에 참가하지 않는 1인의 所有主와

1) S. Baiman, "Agency Research In Manageral Accounting Research : A Survey,"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1982.

2) E. E. Fama, "Agency Problems and the Theory of the Firm,"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8 No. 2, (April 1980), p. 289.

3) J. H. Evanc III, "Economic Model of Auditing in the Accountability Environment," Ph. D. Dessertation, Carnegie-Mellon University, 1979, pp. 8-7.

所有主로부터 權限을 위임받아 企業을 經營하는 1人의 經營者 사이의 契約關係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所有主는 經營者 및 企業活動의 結果로 창출된 企業利益 중에서 經營者에게 지급되는 補償은 원칙적으로 經營者의 努力水準에 의해 결정한다. 또한 이러한 努力의 정도와 一般的인 經濟與件 등이 결합되어 企業의 成果(payoff)를 나타낸다. 따라서 經營者의 補償水準을 결정하는 補償契約패키지를  $S(\cdot)$ 라고 하여 그 基本模型을 설정하기로 한다.<sup>4)</sup>

(1) 經營者의 效用

經營者의 效用은 所有主로부터 받는 補償額(S)에 대한 만족도와 그가 투입해야하는 노력(a)에 따른 고통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數式的 形態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U(s, a) = U(s) - V(a)$$

(2) 企業의 成果

企業의 成果(x)는 基本的으로 經營者가 투입하는 努力(a)의 수준과 企業의 與件的 狀態(w)<sup>5)</sup>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企業의 成果는  $x(a, w)$ 의 函數로 표시할 수 있다.

세가지 형태의 與件的 狀態와 經營者의 努力水準을 분류하여 이에 따른 企業의 成果를 표시하면 <表 2-1>과 같다.

表 2-1. 與件的 狀態—經營者의 努力水準 : 企業成果

| 경영자의 노력              | 여건적 상태         |                |                |
|----------------------|----------------|----------------|----------------|
|                      | W <sub>1</sub> | W <sub>2</sub> | W <sub>3</sub> |
| a <sub>1</sub> (a=5) | ₩42,000        | ₩42,000        | ₩18,000        |
| a <sub>2</sub> (a=3) | 18,000         | 42,000         | 18,000         |
| a <sub>3</sub> (a=0) | 0              | 0              | 0              |

즉, 여건적상태 W<sub>2</sub>에서 經營者가 a=3이라는 努力水準을 대입하면 企業利益이 ₩42,000으로 예측된다.

(3) 所有主의 效用

所有主의 效用은 企業의 成果(x)에 따른 利益水準과 經營者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補償額(s)에 따른 非效用을 차감함으로써 결정된다. 즉 이를 數式形態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U(s, x) = U[x(a, w) - s(a, w)]$$

(4) 情報시스템의 선택

特別한 會計시스템을 선택할 때 情報價値에 대한 評價는 Felthem의 論文에서 시작되었으며,<sup>6)</sup> 그 후 여러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sup>7)</sup>

이하에서는 주로 관찰가능한 情報시스템이 最適補償契約의 설정에 이용됨을 가정한다. 그러나 代替的인 狀況에서 經營者의 補償計劃(incentive plan)과 관련된 모든 情報가 알려져서는 아니될 것이다. 여기서 所有主와 經營者가 선호하는 私的 情報시스템(private information system)이 존재할 수 있다. 最適會計情報시스템의 研究에 대한 확률적 特性과 1인 모델에서 情報選擇과 전형적으로 관련된 費用과 效益(cost and benefit)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委任者인 所有主 立場에서 자신의 效用을 最大化하기 위한 補償契約模型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text{Max}_{a \in A, w \in W} u[x(a, w) - s(a, w)] \phi(w) \dots\dots\dots 2-3$$

$$\text{s.t. } \sum_{w \in W} u[s(a, w) \phi(w) - v(a)] > 0 \dots\dots\dots 2-4$$

$$a \in \text{argmax} \sum u[s(a, w) \phi(w) - v(a)] \dots\dots\dots 2-5$$

4) 李孝翊, 現代會計監査論, 貿易經營社, 1987, pp. 592-594.  
 5) 經營者가 통제할 수 없는 外生的인 조건(exogenous event) 즉, 일반적인 市場條件, 景氣, 資源環境 등의 一般 經營環境을 의미한다.  
 6) G. A. Felthem, "The value of Information," The Accounting Review(October 1968), pp. 684-686.  
 7) Demski(1970), Marshall(1972), Felthem(1977), Hilton(1980, 1981).

式 2-3은 所有主의 効用을 最大化하기 위한 目的 函數를 표시한 것이다. 여기서  $\phi(w)$ 란 特定 與件의 狀態  $w$ 가 발생할 확률을 나타낸다. 式 2-4와 式 2-5는 所有主의 効用極大化를 위한 制約條件이다. 式 2-4의  $u[s(a, w) - \phi w - v(a)]$ 는 經營者의 効用函數를 나타내고 오르면 0는 經營者가 同一한 條件下에서 타기업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最小限의 金額 즉 機會費用(opportunity cost : 0)을 의미한다. 따라서 經營者의 補償額은 이러한 機會費用보다 높아야 한다.

式 2-5는 經營者로 하여금 어떠한 與件의 狀態에서도 最善의 努力水準을 强요하는 自律的인 屬性(self-constrained property)을 표시하기 위한 制約式이다.  $\text{argmax}$ 란 經營者 効用의 目的函數를 最大化할 수 있는 統制變數들의 集合(the set of arguments)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經營者의 觀點에서 볼 때, 특정 努力水準만이 最適의 努力水準(optimal  $a : a^*$ )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努力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强제하는 條件式이 된다.

〈表 2-1〉을 응용하면, 與件의 狀態의  $w_1$ 이 발생하였을 경우 經營者는 企業의 成果가 最大가 되는 ₩42,0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努力水準  $a_1(a=5)$ 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條件을 제시할 수 있다.

$$s(a_1, w_1) > s(a_2, w_1)$$

$$s(a_1, w_1) > s(a_3, w_1)$$

즉,  $w_1$  狀態下에서는  $a_1(a=5)$ 의 努力을 투입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補償額이  $a_2(a=3)$  및  $a_3(a=0)$ 보다 높도록 補償契約을 체결하면 될 것이다. 이에 經營者가  $a_1$ 의 努力을 투입하면 자신의 効用을 最大化시킬 수 있으며, 이 水準이 곧 所有主의 効用도 最大化시키는 解(solution)가 되므로 最適補償契約(optimal incentive contract)이 이루어지는 情報시스템이 된다.<sup>8)</sup>

### 3. 道德的 危險과 觀察可能性

에이전시理論에서 委任者 代理人은 항상 각자 자신의 期待効用을 最大化할 수 있도록 行動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특히 代理人은 利己의이기 때문에 자신의 努力을 最小한 줄이면서 最大限의 補償(incentive)을 원한다. 나아가서는 委任者를 기만하거나 고의적으로 부주의나 태만을 야기시키며[道德的 危險(moral hazard)], 필요에 따라서는 委任者의 利益에 害가 되더라도 자신의 利益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逆選擇(adverse selection)]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委任者는 代理人의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게임 戰略을 수립하고 補償契約 모델에 이들 통제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포함시켜야 한다.

經濟組織內에서는 主人-代理人 關係는 흔히 있는 일이며, 企業組織의 경우 代理人인 經營者는 자신의 經營活動에 대한 努力水準과 그로 인해 창출되는 成果는 물론 經營活動에 관련되는 與件의 狀況을 나타내는 環境의 情報에 대해서는 所有主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所有主-經營者 사이의 情報의 不均衡(asymmetry of information) 現象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現象의 가장 큰 原因은 所有者인 委任者가 相關 情報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情報가 不均衡한 상태에서 代理人은 所有主 보다 유리한 情報의 立場에서 자신의 努力水準을 과대평가 받으려는 誘因을 갖게 된다.

所有主가 經營者의 活動이나 成果를 완전히 관찰할 수 없을 경우 情報의 不均衡으로 經營者는 善意의 最善의 努力을 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所有主를 기만하게 되는 道德的危險이 발생한다. 또한 所有主의 機會 失이나 富의 희생 여부와 관계없이 經營者가 利己의인 견지에서 자신의 利益만을 고려한 行動選擇 즉 逆選擇(adverse selection)이란 現象이 발생된다. 그러나 所有主가 經營者의 經營活動을 관찰할 수 있다면 經營者의 努力投入水準을 기초로 하여 補償支給을 행하는, 즉 機能障碼의 行動(dysfunctional act)을 취하므로 道德的 危險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道德的 危險과 觀察可能性에 關한 B. Holmstrom의 分析은 契約設定과 情報시스템을 研究하는 하나의 기초를 제공하였으며,<sup>9)</sup> J. Demski(1977)는 財務報告의 理論的 研究에 B. Holmstrom의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8) J. Demski, Information analysis, 2nd ed., (Reading Mass :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Inc., 1980) pp. 81~99.

9) B. Holmstrom, Moral Hazard and Obserability,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pp. 89~90.

이러한 分析方法이 고려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측면은 長期契約이며 이에 따라 利害關係가 대립되는 契約關係에 완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 2.4 危險分擔과 補償契約

에이전시理論에서 각자 추구하는 期待効用은 장래에 기대되는 각자의 成果를 기초로 하며 이러한 成果는 不確實性下의 期待値다. 따라서 각자의 成果에 내재하는 危險을 所有主(委任者)와 代理人 간에 配分하는 문제는 補償契約모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補償契約모델에서 危險分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要因으로 첫째, 委任者와 代理人의 性向에 따라 달라지는 危險에 대한 態度와 둘째, 委任者가 觀察可能한 情報의 對象 즉 利用可能한 情報量으로 구분된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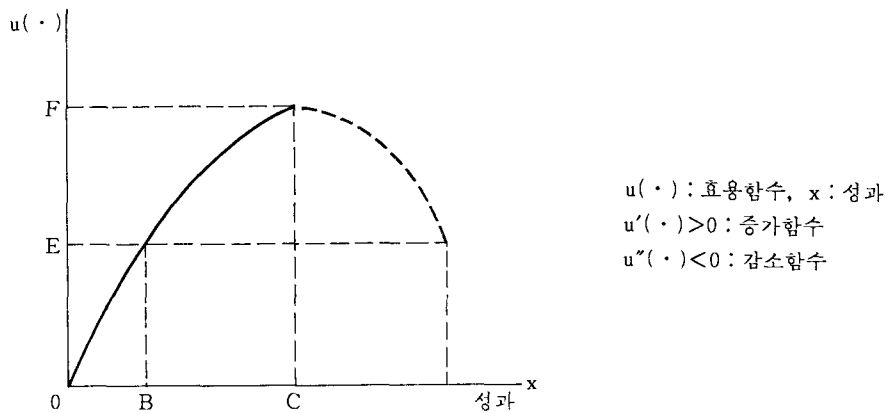
##### (1) 危險에 대한 態度

미래의 不確實한 成果에 대한 態度에 따라 危險指向型(risk-prone), 危險中立型(risk-neutral) 및 危險回避型(risk-averse)으로 구분된다.

만약 어떤 意思決定者가 不滿足의 公理나 限界効用遞減의 法則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効用函數를 가진 사람이라면 不確實性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럽고 모험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래의 不確實性에 대하여 冒險의 行動을 싫어하는 사람을 危險回避型이라한다. 意思決定論이나 情報經濟學에서의 意思決定者는 危險回避型이나, 危險中立型으로 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sup>11)</sup>

危險回避型은 成果를 많이 가지며 가질수록 자기의 効用單位를 더 증가시키기 위하여 점점 더 많은 成果를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不確實性下의 意思決定에서 意思決定者가 어떤 代價를 받지 않고서는 結果가 不確實한 어떤 行動을 취하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 이러한 댓가를 일반적으로 危險프리미엄(risk premium)<sup>12)</sup>이라고 한다.

正常的인 狀態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危險하기를 싫어하므로 危險回避型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効用函數( $u(\cdot)$ )는 <圖表 2-1>과 같다.



<圖表 2-1> 危險回避型의 効用函數

즉 成果 1單位가 증가함에 따라 効用的 增加速度가 점점 감소함을 뜻하며 이는 限界効用遞減의 法則을 반영하는 오목한(concave) 効用函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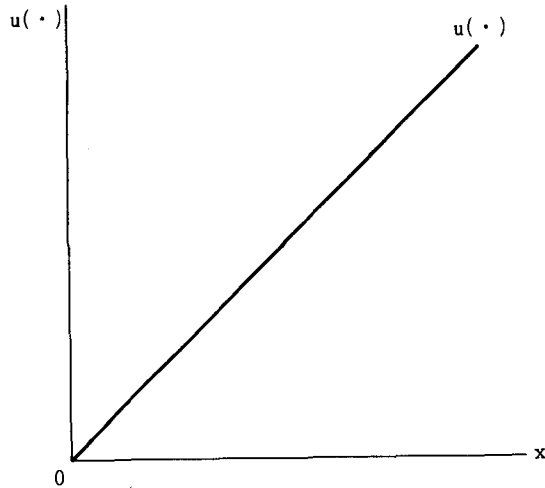
10) 李孝翊, 前掲書, pp. 596~599.

11) 盧炳卓, 金台煥, 情報經濟學, 博英社, 1984, pp. 77~78.

12) 危險 프리미엄(risk premium): 危險回避型의 사람에게 結果가 不確實한 行動을 취하도록 할때 추가로 지불되어야만 하는 代價로 항상 0보다 크다.  $E(x) = x + \Delta x(E(x))$ : 기대값,  $x$ :  $E(x)$ 에 상응하는 확실한 값,  $\Delta x$ : 위험 프리미엄).

前述한 危險回避型이라는 反對로 幸運의 조그만 가능성을 바라고 모험하기를 좋아한다면 危險指向型(risk-prone)이며 危險 그 자체에 어떤 매력을 느끼는 경우이므로 合理的인 意思決定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型의 效用함수는 <圖表 2-1>의 곡선과는 정반대의 형태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意思決定者가 危險回避型도 아니고 危險指向型도 아닌, 다시 말해서 危險에 대한 特別한 性向을 갖지 않는 경우를 危險中立型(risk-neutral)이라 하며 效用函數가 曲線이 아니고 線型效用函數로 나타나며 <圖表 2-2>와 같다.



圖表 2-2. 危險中立型 效用函數

## (2) 情報의 視察과 補償契約

委任者가 관찰할 수 있는 情報의 대상은 企業의 成果(x)와 與件的 狀態(w) 및 經營者의 努力水準 등이 있으나, 설명의 용이성 때문에 危險分擔의 의미를 與件的 狀態에 대한 관찰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sup>13)</sup>

### 1. 完全한 情報—委任者가 觀察가능한 與件的 狀態

企業의 成果와 與件的 狀態에 관한 情報로서 代理人의 補償額을 결정하는 契約을 체결하는 것으로 補償契約 패키지는  $s(x, w)$ 의 형태를 갖는다.

危險分擔측면에서 補償契約은 代理人의 補償額이 不確實한 與件的 狀態와 企業의 成果에 연계되어 있으므로 代理人은 궁극적으로 未來의 不確實성에 따른 危險을 委任者와 분담하는 결과가 된다. 動機賦與의 측면에서도 代理人이 危險回避型일지라도 그의 補償水準을 성과와 관련시킴이 그로 하여금 最善의 努力을 하게하며 危險을 分擔시키는 바람직한 방법임을 의미한다.

同一한 狀況에서 만약 代理人이 危險中立型이고, 委任者가 危險回避型이라 하면  $s(x)$  形態의 補償契約이 바람직하다. 즉, 장래 발생하게 될 與件的 狀態와는 관계없이 經營者와 補償額은 모든 狀況에서 企業成果에 의존하므로 代理人이 不確實에 따른 모든 危險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委任者는 企業을 經營者에게 賃貸하여 주고 그 댓가로 定額賃借料를 받는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된다.

### 2. 不完全한 情報 委任者가 觀察不可能한 與件的 狀態

에이전시에 관련되는 與件的 狀態를 觀察할 수 없을 경우에는 代理人에게 道德的 危險이나 逆選擇 등이 예상

13) N. Harris and A. Raviv, "Optimal Incentive Contrac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Journal of Economic Theory* (April 1979), pp. 231~259.

되므로 努力水準의 정도(a)와 企業의 成果(x)를 모두 연계시켜 補償額을 결정하는 補償契約인 S(a, x)의 形態를 취하게 된다. 즉 代理人의 努力水準 정도와 그의 補償額을 관련시키므로 兩者간에 危險을 相互分擔케 하는 結果가 된다.

代理人에게 一定水準의 努力을 강요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強制契約(forcing contract)이다. 이는 代理人이 一定水準 혹은 최저수준의 努力을 행하였을 경우, S(x)形態의 補償을 해주지만 그 水準 以下の 努力에 대해서는 補償額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이다. 그러므로 代理人은 반드시 契約에 규정된 努力水準 以上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代理人이 一定水準 以上の 努力을 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補償額 S(x)는 전술한 바와 같이 委任者와 代理人의 危險에 대한 態度에 따라 달리 설정된다.<sup>14)</sup>

### 3. 經濟的 代理人으로서 監査人

現在 혹은 潛在的 投資者의 必要性에 의한 요구이외도 受託責任 또는 에이전시理論이 監査의 必要性에 대한 설명을 가능케 해준다.<sup>15)</sup> 이에 의하면 企業의 所有主는 물론이고 經營者 역시 監査人이 財務諸表에 부여해주는 公信用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經營者에 의한 監査要求는 그가 所有主의 代理人 혹은 受任者라는 사실과 함께 所有主와 經營者 사이에는 企業의 目的이나 經營目標 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인된다. 所有主와 經營者 사이에 利害의 相衡關係(conflict relationship)가 있을 경우에 所有主는 經營者에 대한 補償을 감소시키려 할 것이며, 반면에 經營者는 獨立的인 제3자에 의해 감사를 받음으로써 所有主와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利害相衡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受託責任者인 經營者는 投資者 등 企業外部의 利害關係者와는 또 다른 이유에서 外部監査人에 의한 독립된 評價에 의해서도 會計監査의 必要性을 설명할 수 있다.

#### 3.1 會計監査의 必要性

만일 우리 社會가 독립된 會計專門家에 의한 檢證過程을 거친 財務諸表를 요구하지 않거나 거기에 포함된 會計情報에 별다른 價値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會計監査는 행하여질 필요성이 없으며 또한 요구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經濟規模의 擴大와 複雜·多樣해진 企業環境<sup>16)</sup> 때문에 監査만은 財務諸表에 대한 社會的 要求는 점증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社會는 情報의 危險이 감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1972年 美國會計學會가 발표한 「A Statement of Basic Auditing Concept : ASOBAC」에 의하면 監査情報에 대한 社會的 要求가 증대되고 있는 理論的인 理由를 다음과 같은 要因으로 설명하고 있다.<sup>17)</sup>

##### (1) 利害關係의 相衡(conflict of interest)

企業의 규모가 확대되고, 去來內容이 복잡해짐에 따라 企業은 수 많은 異質的인 利害關係者들과 관련을 갖는

14)

| 계약당사자<br>위험에 대한 태도 | 委任者 | 代理人 | 定額補償<br>對象者 |
|--------------------|-----|-----|-------------|
| neutral            | ○   |     | 代理人         |
| averse             |     | ○   |             |
| neutral            |     | ○   | 委任者         |
| adverse            | ○   |     |             |

15) 李權洙, 現代會計監査, 法文社, 1987, pp. 34~35.

16) 鄭基英, “會計規制의 理論과 展開方向 : 企業會計基準의 改定에 부처,” 經營學研究, 제18권 2호(1989, 2), p. 342.

“多樣性 : 이용자집단은 投資者, 債權者, 政府機關, 業務組合, 經營者, 會計監査人, 消費者 등으로 다양하다.”

“複雜性 : 동일집단내에서도, 富, 教育, 經驗, 危險에 대한 態度 등이 同質的이지 않다.”

17) Auditing concepts Committee, “Reporting of the Committee on Basic Auditing Concepts,” The Accounting Review Vol. 47 Supp. 1972, pp. 25~26.

다. 그들의 利害關係는 단일화될 수 없으며 서로가 對立關係를 이룬다. 財務諸表는 이들 복잡하고 다양한 집단의 情報慾求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일반적인 目的을 지니고서 작성되며, 그러한 目的達成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信賴性(reliability)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信賴性이라는 情報의 質的 屬性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에 의해 証明機能을 수행하는 會計監査를 필요로 한다.

#### (2) 會計情報의 重要性 增大(consequence)

意思決定規模가 커지고, 그 內容 또한 복잡함에 따라 直觀에 의한 결정은 점차 퇴색되고 믿을 수 있는 情報에 根據한 意思決定의 重要性이 강조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情報源으로서의 財務諸表의 위치가 인식되고 있다. 意思決定을 위한 合理的 根據로서 投資者, 債權者들은 財務諸表가 작성자의 主觀이나 編見(bias)이 최대한 배제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會計原則(GAAP)에 따라서 작성되었다는 데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

#### (3) 會計情報內容의 複雜性(complexity)

會計의 대상이 되는 去來類型이 점차로 다양화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 역시 복잡해짐에 따라 일반적인 利害關係者로서는 會計處理方法이나 結果의 適正性을 판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財務諸表에 대해 誤解나 理解不足 등으로 인한 意思決定 誤謬의 危險性은 증가하게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會計專門家에 의한 監査를 필요로 한다.

#### (4) 會計過程의 隔離(remoteness)

利害關係者의 量的 增加와 地域的, 時間的인 조건 그리고 각종 法律的 制約은 利害關係者들이 직접 會計處理過程에 접근하여 그 妥當性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그들은 會社作成 財務諸表를 그대로 신뢰하지 않으므로 제3자인 會計專門家에게 그에 대한 確認機能을 위탁할 수 밖에 없다.<sup>18)</sup>

以上の 理由에서 주장되는 바는 情報의 質에 대한 독립된 判斷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제3자의 협력없이 會計情報利用者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意思決定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情報의 危險減少를 위해 독립된 제3자가 검증하므로 時間과 努力이 절약되고 信賴性있는 情報를 접하게 된다.

### 3.2 監査人の 役割

會計情報를 評價·報告하는 會計監査人の 役割과 責任은 결과적으로 稀少資源의 合理的인 配分을 적극적으로 돕는 중요한 社會經濟的 機能이다.

따라서 監査人の 役割을 ASOBAC에서 주장하는 바 理論的 背景을 고찰하고, 經濟的 代理人으로서 自身の 効用最大化와 더불어 危險分擔者로서 그의 役割을 검토하기로 한다.<sup>19)</sup>

#### (1) ASOBAC

ASOBAC에서 전개한 會計情報利用者를 중심으로 한 監査의 役割과 機能을 논의하기로 한다. 情報利用者が 情報를 입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判斷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입수한 情報가 目的適合한 것인가 하는 情報의 內容을 해석하는 것이며, 둘째, 입수한 정보에 어느 정도의 信賴性이 있는가 하는 情報의 質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監査의 機能은 情報의 質을 判斷하는데 利用者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ASOBAC은 會計情報의 傳達를 위한 監査의 機能을 圖表 3-1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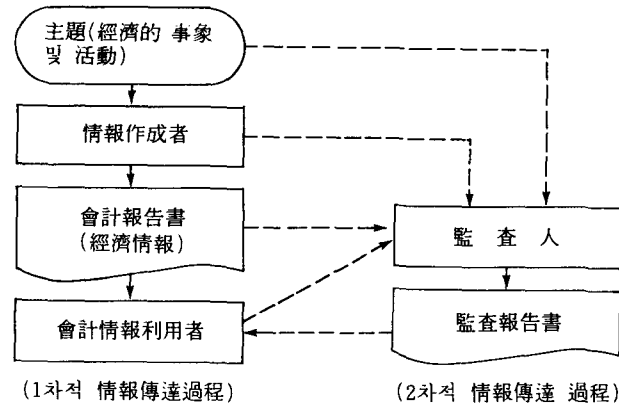
二次的 會計情報의 傳達體系를 살펴보면, 監査人은 對象과 作成者로부터 證據를 입수하여 會計情報가 주장하는 內容과 設定된 基準과의 일치하는 程度를 판단한 후 그 結果를 監査意見으로 會計情報利用者에게 제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제시된 監査意見은 會計情報利用자가 情報의 質을 판단하는데 이용된다. 이 경우 外部監査가 會計情報에 부가하는 評價의 “統制”와 “信賴性”이라는 두가지 側面이며, 이것이 바로 監査人の 機能이라 할 수 있다.

統制機能은 事後的 機能과 事前的 機能으로 구분할 수 있다. 前者는 會計情報가 설정된 基準에 따라 제3자에 의하여 검증되었음을 보증하는 것이며, 後者의 경우, 情報作成者는 自身이 작성한 會計情報가 제3자에 의한 전

18) 李權洙, 前掲書, p. 22.

19) AAA, A Statement of Basic Auditing Concepts, by Committee On Basic Auditing Concepts, 1973, pp. 8~18.





圖表 3-1. 會計情報の傳達과 監査人の役割

문적인 檢査가 수행될 것을 알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基準에 부합되는 會計정보를 작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會計정보의 傳達過程에 統制機能이 개입되고 있을 때 會計정보利用者는 會計정보에 대하여 높은 신뢰감을 갖게 된다. 또한 會計정보의 信賴性이 제고되면 會計정보利用者의 情報危險이 감소되어 情報作成者와 情報利用者間에 존재하는 情報の 不均衡(information asymmetry)이 해소됨으로 情報の 均衡狀態가 유도되는 것이다.

(2) 危險分擔者로서 監査人

監査人이 監査機能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으로 費用이 발생하게 된다. 監査人도 經濟的 代理人으로서 費用-效益關係를 분석하여 자신의 効用을 최대화할 것이다. 따라서 所有主는 監査人을 고용하고 最小限의 期待効用 즉 機會費用을 충족시켜 주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監査의 效益과 費用關係를 검증하고, 經濟的 代理人 즉 監査人이 어떻게 危險을 分擔하는지를 實例로 分析하기로 한다.<sup>20)</sup> ① 所有主, 經營者 및 監査人은 모두 危險回避型(risk averse)으로서 다음과 같은 効用函數를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所有主 :  $EU(0) = \sqrt{x-s-t}$   
 經營者 :  $EU(1) = \sqrt{s-a_1}$   
 監査人 :  $EU(2) = \sqrt{t}$

- x : 기업의 성과
- s : 經營者에 대한 보상액
- t : 監査인에 대한 보상액
- a<sub>1</sub> : 經營者의 노력 투입에 대한 원가 즉 非効用

② 經營者의 努力投入水準은 일을 하는 것과 일을 하지 않는 것의 두 경우만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일을 하였을 경우 經營者의 非効用(disutility) 즉, 効用減少는 1이다.

③ 企業의 成果(x)와 이의 發生確率(ϕ(x))은 다음과 같다.

|                          | 기업의 성과(x) 발생확률(ϕ(x)) |     |
|--------------------------|----------------------|-----|
| a <sub>1</sub> =0 노력 불투입 | 16                   | 0.5 |
| a <sub>1</sub> :1 노력 투입  | 40                   | 0.5 |

④ 監査人의 機會費用은 10이며, 經營者의 機會費用은 2이다.

⑤ 經營者가 지급받는 最小限의 期待効用은 5이다.

이렇게 단순화시킨 假定이 危險分擔의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契約에 부과된 罰則(penalty)이 經營者로 하여금 a<sub>1</sub>=1을 선택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企業成果 x=10일 때 經營者의 補償額은 4, x=40일 때 經營者의 補償額은 16이 되도록 經營者가 요구하는 契約이 最適契約이다. 이러한 경우에 각각의 期待効用은 다음과 같다.

20) R. Antle, "The Auditor as an Economic Agen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20, No. 2, (Autumn 1982), pp. 513~514.

$$EU_0 = \frac{1}{2}\sqrt{10-4} + \frac{1}{2}\sqrt{40-16} = 1.5\sqrt{6} < 3.68$$

$$EU_1 = \frac{1}{2}\sqrt{4} + \frac{1}{2}\sqrt{16-1} = 2$$

$$EU_2 = 10 (\text{機會費用})$$

이제 所有主는 충분한 資力을 갖춘(with deep pocket) 감사인을 고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다. 즉 현금이나 現行價値에 100에 대한 제곱근 效用函數를 갖는 監査人을 고용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所有主와 監査人 兩當事者들을 더욱 유족하게 해주는 契約으로 危險分擔에 關한 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러한 假定下에 所有主는 監査人과 雇傭契約을 체결할 때, 補償契約 條件은 監査人의 監視(monitors)의 役割에 따라 經營者가 最善의 努力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監査人에게 所有主의 몫에서 5를 지급한다. 그러나 經營者가 努力을 투입하지 않아 監視의 役割이 아무런 效果를 얻지 못하여 企業의 成果가 10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罰則으로 監査人이 所有主에게 4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監査人에게 危險分擔을 요구한 경우에 각각의 期待效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EU_0 = \frac{1}{2}\sqrt{10-4+4} + \frac{1}{2}\sqrt{40-16-5} > 3.76$$

$$EU_1 = \frac{1}{2}\sqrt{4} + \frac{1}{2}\sqrt{16-1} = 2$$

$$EU_2 = \frac{1}{2}\sqrt{100-4} + \frac{1}{2}\sqrt{100+5} > 10.02$$

위의 側에서와 같이 所有主가 監査人을 고용하였을 경우에, 所有主 自身の 期待效用은 물론 監査人의 期待效用도 증가하게 되며 이는 곧 監査의 必要性和 그 效益을 입증하는 것이다.<sup>21)</sup> 그러므로 監査人은 經濟的 代理人으로서 그가 부담한 危險에 대하여 충분한 補償이 이루어진다면, 危險分擔에 기꺼이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企業主는 補償契約 締結時 일단 監査人과의 危險分擔을 고려하여야 한다.

### 3.3 所有主-經營者-監査人 모델

所有主-經營者게임에 監査人을 추가로 도입한 경우, 經營者와 監査人의 無作為(randomization)를 고려할지라도 最小限의 效用과 補償이 양립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所有主의 期待效用을 最大化한다는 것은 監査人과 經營者의 行爲가 正常的이지 못함을 함의하고 있다는 것을 주시 발견하게 된다. 또한 監査人의 無作為 戰略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22)</sup>

따라서 모델의 構成要素와 戰略의 領域을 결정한 후 所有主-經營者-監査人 모델을 설정하기로 한다.

#### (1) 모델의 構成要素

所有主-經營者모델에 監査人의 가능한 行動集合  $A_2 \in R^N$ 을 추가한다.  $A_2$ 는 監査人의 가능한 努力水準이나 去來檢證을 위한 利用可能한 標本의 크기를 나타낸다.  $A_2$ 의 한 요소  $a_2$ 는 監査人의 調查活動(investigation act)이라 하며 어떤 경우에  $a_2$ 는 약간의 確率變數를 창출시키며 監査人은 이러한 確率變數가 실현되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確率變數의 값을  $y$ 라 하자.  $y$ 는 集合  $Y \subset R^N$ 의 한 요소이다.  $y$ 가  $a_1$ 에 의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a_2$ 에 의존하는 것으로 고려해 보자. 즉  $y = y(a_1, a_2, w)$ 이다. 이것은 곧  $y$ 의 포괄적인 說明可能領域이다.  $y$ 는 情報監視 또는  $a_1$ 에 대한 情報로 설명될 것이다. 財務報告의 代理人으로서 繼續性を 유지하기 위하여  $y$ 는 統計的으로  $m$ (경영자보고)과 관련되며 企業會計記錄의 檢證結果이다.

21)

|         | 감사인 고용前 | 감사인 고용後 | 증감    |
|---------|---------|---------|-------|
| 소유주의 효용 | 3.6     | 3.76    | +0.08 |
| 감사인의 효용 | 10      | 10.02   | +0.02 |

22) R. Antle, *op. cit.*, pp. 514~526.

· 監査人の 調査活動 또한 確率變數  $z$ 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z=z(a_1, a_2, w)$ 이며 또다시  $z$ 는 市場狀況 등과 같이 共同的으로 관찰가능한 변수다.

(2) 戰略領域

監査人は 經營者と 유사한 報告問題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監査人は  $Y$ 에서 부터  $Y$ 까지의 函數空間인  $Y$ 로부터 하나의 函數  $y(0)$ 를 선택하는 것으로 모델화 할 수 있다.

값  $y(y)$ 는 所有主, 經營者 및 監査人이 관찰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經營者の 契約은 이제  $m, z$ , 및  $y$ 에 의해 성립된다. 그러므로,  $Sy$ 가  $Y \times Z \times M \rightarrow R$ 에서 모든 函數領域을  $S$ 라 하자. 所有主로부터 經營者에 이전되는 金額은  $S(y, z, m)$ 로 표시된다.

또한, 所有主는 監査人에 대한 지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監査人에게 移轉은  $z, m$ , 및  $y$ 에 의해 결정된다.  $Y \times Z \times M \rightarrow R$ 의 函數空間을  $T$ 라고 하자. 그러면  $t(y, z, m)$ 는 所有主로부터 監査人에게 이전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일련의 活動遂行을 어떻게 모델화할것인가? 하는 매우 重大한 意思決定問題에 직면케 된다. 監査人和 經營者가 所有主의 行動을 관찰하는 가운데서 所有主가 최초로 行動하는 것으로 간주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直觀的인 判斷은 所有主가 監査人 및 經營者の 活動을 근거로 補償計劃을 수립함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經營者和 監査人の 活動順序를 결정함은 복잡하고도 매우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기술상, 전개상 편의를 위해 兩者 活動이 동시적인 것으로 본다.

이렇게 兩者의 活動을 동시적인 것으로 볼 때, 經營者가 이용할 수 있는 純粹戰略領域은  $I$ 에서  $A_1 \times M$ 까지의 函數空間이다. 監査人の 純粹戰略領域은  $I$ 에서  $A_2 \times M$ 까지의 函數集合이다. 또다시 混合戰略을 표시하기 위하여  $\sigma_i \in \Sigma_i$ 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0, 1]$ 에서 부터 적합한 純粹戰略領域까지의 函數들이다.

所有主-經營者게임의 확장 형태인 所有主-經營者-監査人에 대한 時間的 順序는 圖表 3-2와 같다.

圖表 3-2. 所有主-經營者-監査人模型의 時間的 順序

|                                    |  |   |
|------------------------------------|--|---|
| 所有主( $i=0$ )는 補償契約 $I \in I$ 를 선택함 | 經營者( $i=1$ )는 전략( $a_1, m(\cdot) \in A_1 \times M$ )을 선택하고 監査人( $i=2$ )은 전략( $a_1, m(\cdot) \in A_2 \times Y$ )를 선택함 | $x, y, z, m$ 이 실현되고 經營者에게 $S(y, z, m)$ 이 지급되고 監査人에게 $t(y, z, m)$ 이 지급됨. |
|------------------------------------|--|---|

(3) 最適行動모델<sup>23)</sup>

所有主와 經營者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각각 函數  $U_0: R \rightarrow R$ 와  $U_1: R \times A_1 \rightarrow R$ 의 領域에서 행동하고 監査人은 마치 Von-Neumann-Morgenstern의 期待效用을 最大化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처음 논의에서  $U_2$ 는 增加函數이며, 凹(concave)型이며, 두번째 논의에서는 減少函數이다. 증가함수인  $U_2$ 는 수취된 現金에 대한 目的適合性을 부여하고 두번째 논의는 감사인으로 하여금 非金錢的 要因을 고려하게 한다.

期待效用을 측정하기 위하여  $\sigma_0=I, \sigma_1(V_1, I)=(a_1, m(\cdot))$  및  $\sigma_2=(V_2, I)=(a_2, y(\cdot))$  등의 부호로 函數關係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text{소유주의 기대효용} : E \{U_0; (a_1, m(\cdot)), (a_2, y(\cdot)), I\} = \int_{\Omega} U_0(x - s(y, z, m) - t(y, z, m)) d\mu \dots\dots\dots (3.1)$$

$$\text{경영자의 기대효용} : E \{U_1; (a_1, m(\cdot)), (a_2, y(\cdot)), I\} = \int_{\Omega} U_1(s(y, z, m), a_1) d\mu \dots\dots\dots (3.2)$$

$$\text{감사인의 기대효용} : E \{U_2; (a, m(\cdot)), (a_2, y(\cdot)), I\} = \int_{\Omega} U_2(t(y, z, m), a_2) d\mu \dots\dots\dots (3.3)$$

總效用

$$\sigma_0, \sigma_1, \sigma_2 \in \Sigma_0 \times \Sigma_1 \times \Sigma_2 \text{에 대하여}$$

$$E \{U_i; \sigma_1, \sigma_2, \sigma_0\} = \int_0^1 \int_0^1 \int_0^1 E \{U_i; \sigma_1(V_1, \sigma_0, (V_0)), \sigma_2, \sigma_0(V_0), \sigma_0(V_0)\} dv_0, dv_1, dv_2 \dots\dots\dots (3.4)$$

$i=0, 1, 2$

23) R. Antle, *op. cit.*, pp. 514-518.

이렇게 확장된 모델에서  $(\sigma^*_0, \sigma^*_1, \sigma^*_2)$ 에 관한 代理均衡의 三重戰略(a triple of strategies)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text{Max } E \{U_0; \sigma^*_1, \sigma^*_2, \sigma_0\} \dots\dots\dots (3.5)$$

$$s, t : E \{U_i; \sigma^*_1, \sigma^*_2, \sigma_0\} > 0, i=1,2 \dots\dots\dots (3.6)$$

$$\sigma^*_1 \in \arg \max_{\sigma_1} E \{U_1; \sigma_1(\cdot, \sigma_0(v_0)), \sigma^*_2(\cdot, \sigma_0(v_0)), \sigma_0(v_0)\}$$

모든 확률변수  $v_0$ 에 대하여  $\dots\dots\dots (3.7)$

$$\sigma^*_2 \in \arg \max_{\sigma_2} E \{U_2; \sigma^*_1(\cdot, \sigma_0(v_0)), \sigma_2(\cdot, \sigma_0(v_0)), \sigma_0(v_0)\}$$

모든 확률변수  $v_0$ 에 대하여  $\dots\dots\dots (3.8)$

위의 模型은 완전한 內쉬균형을 이루고 있다. 式 3-5는 所有主가 자신희 期待效用  $U_0$ 를 最大化하는 동시에 經營者와 監査人의 均衡戰略을 유도하면서 混合戰略  $\sigma^*_0$ 를 선택함을 의미한다. 式 3-6은 에이전시均衡에 따라 所有主가 經營者와 監査人의 機會費用  $O_1$ 과  $O_2$ 이상 보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 報告原則(revelation principle)이 所有主-經營者-監査人 셀팅에 적용됨을 검토해 보자. 즉 報告原則이 最適報告函數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해 준다는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I \in I, (a_1^*, \hat{m}^*(\cdot)) \in A_1 \times M$  및  $(a_2^*, \hat{y}^*(\cdot)) \in A_2 \times Y$ 인 것을 다음의 목적함수와 제약식에 의하여 정의된다.

$$\text{Max } E \{U_0; (a_1^*, \hat{m}^*(\cdot)), (a_2^*, \hat{y}^*(\cdot)), I\} \dots\dots\dots (3.9)$$

$$s \cdot t : E \{U_i; (a_1^*, \hat{m}^*(\cdot)), (a_2^*, \hat{y}^*(\cdot)), I\} > 0, i=1,2 \dots\dots\dots (3.10)$$

$$(a_1^*, \hat{m}^*(\cdot)) \in \arg \max_{A_1 \times M} E \{U_1; \hat{m}(\cdot), (a_1^*, \hat{y}^*(\cdot)), I\} \dots\dots\dots (3.11)$$

$$(a_2^*, \hat{y}^*(\cdot)) \in \arg \max_{A_2 \times Y} E \{U_2; (a_1^*, \hat{m}^*(\cdot)), (a_2, \hat{y}(\cdot)), I\} \dots\dots\dots (3.12)$$

報告原則으로 확장은 眞實-推論契約의 定義를 애도하게 된다. 補償契約  $I$ 는 同一狀態의 最善行動의 構成要因이라면, 眞實을 추론하게 된다. 즉  $(a_1^*, id_M)$ 와  $(a_2^*, id_Y)$ 는  $I$ 에 의해 유도된 서브게임에서 內쉬균형이다. 이것은 眞實報告를 포함한 純粹戰略 均衡들이 그들의 戰略가운데 지배당하는 것으로  $I(a_1^*, \hat{m}^*(\cdot)), (a_2^*, \hat{y}^*(\cdot))$ 에서 補償契約이 眞實을 보고하는 것으로  $\bar{I}(a_1^*, id_M), (a_2^*, id_Y)$  形態의 均衡의 解도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y$ 와  $m$ 의 外生變數 分布( $w$ 에 의해 추론됨)는 이용가능하므로 바람직하다. 따라서  $I \in I, a_1^* \in A, a_2^* \in A_2$ 임을 다음의 目的函數와 制約式으로 정의 할 수 있다.

$$\text{Max } E \{U_0; (a_1^*, id_M), (a_2^*, id_Y), I\} \dots\dots\dots (3.13)$$

$$s \cdot t : E \{U_i; (a_1^*, id_M), (a_2^*, id_Y), I\} > 0, i=1, 2 \dots\dots\dots (3.14)$$

$$(a_1^*, id_M) \in \arg \max_{A_1 \times M} E \{U_1; (a_1, \hat{m}(\cdot)), (a_2^*, id_Y), I\} \dots\dots\dots (3.15)$$

$$(a_2^*, id_Y) \in \arg \max_{A_2 \times Y} E \{U_2; (a_1^*, \hat{m}(\cdot)), (a_2, \hat{y}(\cdot)), I\} \dots\dots\dots (3.16)$$

#### 4. 에이전시모델의 限界點과 改善方向

##### 4.1 限界點

에이전시 理論이 社會科學研究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에이전시 理論은 現實世界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理論 및 모델이 形成되었으며, 研究의 實證의 結果에 대한 진전이 없었다.

또한 에이전시 理論에서는 주로 單一人의 代理人·委任者 組織, 單一期間모델, 單一目的函數에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限界點을 극복하고, 보다 적절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多數代理人 모델, 多數期間모델 및 多目的 모델로서의 改善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 4.2 改善方向

###### (1) 多數代理人 모델(multiple-agents model)

기본적인 契約모델이 多數代理人까지 확장될 때, 그 결과는 최소한 세가지 이유로 인하여 유지될 수 있을 것

이다.

(i) 企業構成員간의 미묘한 談合(collusion)이라는 문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즉 실질적으로 상이한 僱傭契約를 맺을 수 있는 企業構成員간의 談合行爲가 나타날 수 있다.

(ii) 組織階層水準의 決定, 代理人들의 努力의 조정, 代理人들의 相異한 行爲에 대한 計劃, 그리고 그들의 成果 監督같은 組織的인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이다.

(iii) 기본적인 契約모델의 順次決定게임에서 강조된 純粹戰略은 代理人이 다른 代理人을 상대로 同時決定게임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確率的 行爲의 効用을 발견하게 되므로 더 이상 最適일 수 없다.<sup>24)</sup>

이처럼 기본적인 에이전시모델을 多數代理人까지 확장하는데 따른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分野에 대한 研究가 수행되었다. Antle은 期待効用 最大化를 監査人이 委任者-代理人모델에 적용된 경우로서 基本的인 에이전시모델을 확장했다. 또한 Nalebuff와 Stiglitz<sup>25)</sup>는 委任者와 代理人 사이에 설정될 수 있는 補償契約의 특성을 규정했다. 그들은 보수가 代理人의 상대적 成果函數인 경쟁적 補償計劃이 危險·補償, 그리고 융통성과 특징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 어쨌든 多數代理人의 成果를 측정하기 위해서 委任者가 할 수 있는 最善策은 각 代理人의 行爲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상이한 企業單位나 부문에서 수행되는 代理人 集團의 成果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2) 多數期間모델(multiple-period models)<sup>26)</sup>

에이전시모델을 단일기간으로 제한할 때 중요한 내용들이 은폐될 수 있다. 예를들면 下向趨勢의 賃金, 信譽에 대한 重要性, 市場變數에서의 명성과 같은 확실히 관찰된 현상은 單一期間에서는 모두 의미가 없으며 多數期間을 고려해야 한다. 基本的인 에이전시모델을 多數期間으로 확장함으로써 長-短期的 利益極大化問題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單一期間的 모델은 多數期間의 에이전시모델로 확장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게 된다.

i. 企業의 經營成果에 영향을 미치는 確率的 環境變數는 각 기간마다 다를 수 있고 각 기간의 營業결과에 相異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不確實性下的 企業의 經營成果에 미치는 효과는 單一期間모델보다도 더욱 명백하게 나타날 수 있다.

ii. 投資와 生産意思決定의 短期的 効果와 長期的 效果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한다.

iii. 會計學上的 繼續企業假定과 일치하고 單一期間모델보다 더욱 정확하게 會計問題의 特點을 나타낸다.

iv. 企業은 계속적으로 여러기간에 經營成果를 실현시키며 代理人의 評價計劃이 보고된 成果에 의존할 경우, 여러기간의 代理人 行爲를 나타내므로 單一期間보다 더 정확하다.

(3) 多目的모델(multi-objective model)

기본적인 에이전시모델에서 委任者의 目的函數는 단일가치기준(single-value criterion)과 관련하여 형성된다. 즉 委任者가 代理人에게 補償을 지급한 후 잔여분의 極大化가 目的函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委任者는 代理人의 社會的 責任 完遂와 專門性 增進과 代理人을 만족시킬 수 있는 最小限의 學務費를 서로 조화시키기 위한 어려운 문제점들을 직면하게 된다.

單一目的일지라도 最適契約를 달성하려면 委任者는 에이전시費用의 最小化나 追加情報費用의 最小化 그리고 代理人의 福祉增進과 같은 다양한 下位目標를 충족시켜야 한다. 企業組織의 목적과는 달리 企業內的 各 個人들은 서로 다른 目的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통하여 代理人(종업원)과 委任者(경영자)간의 契約에 관한 보다 의미있는 研究가 多數目的모델과 관련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多數目的모델을 적용한 연구는 별로 없다. 왜냐하면 에이전시理論上的 多數目的概念이 생소하고 多數目的 最適化技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分野에 대한 研究는 Namazi와 Namazi and Chen의 것을 들 수 있다.<sup>27)</sup> 그들은 假說的인 會計法人을 設立하고 委任者가 多數目的 基準에 직면할 때 代理人(監査人)과 委

24) S. Baiman, *op. cit.*, pp. 154~213.

25) B. J. Nalebuff and Stiglitz, J. E., "Prizes and Incentives: Toward a General Theory of Compensation and Competi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Spring 1983), pp. 21~43.

26) R. A. Lambert, "Managerial Incentives in Multiperiod Agency Relationship," Ph. 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December, 1981.

27) M. Namazi, "Theoretical Developments of Principal-Agent Employment Contract in Accounting: The State of the Art,"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1985, pp. 150~151.

任者(經營者)간에 설정될 수 있는 補償契約의 特性을 조사함으로써 기본적인 에이전시모델을 확장했다.

이처럼 기본적인 에이전시모델에서의 限界點을 극복하기 위해서 몇가지 基本假定들을 확장하는 研究가 진행되었지만 그 改善點이 반드시 長點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즉 복잡한 現實世界, 특히 會計學에 응용하는 데는 상당한 취약점이 존재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5. 要約 및 結言

에이전시理論의 基本的인 目標은 最適補償契約으로 파레토적 最適狀態를 유지하는데 있다. 複雜하고 多様な 集團을 모델화하기 위한 一般的 假定 및 各各의 效用을 企業成果와 관련하여 분석하므로 선택가능한 最適情報 시스템을 유도하였다.

所有主-經營者の 期待效用을 最大化하기 위한 契約締結의 行動追求過程에서 所有主와 代理人의 情報不均衡으로 代理人의 所有主에 대한 欺瞞, 不注意, 怠慢 등의 道德的 危險과 委任者의 利益에 害가 되더라도 代理人의 利益만을 위한 逆選擇現象이 발생된다.

期待效用을 最大化하려는 未來는 불확실하다. 補償契約모델의 설정과 관련한 環境 역시 불확실하며 이러한 不確實性에 대한 態도와 情報의 觀察可能性에 따라 危險分擔이 달라진다.

ASOBAC에서 주장한 會計監査의 必要性을 ① 利害關係의 相衡, ② 會計情報의 重要性 增大, ③ 會計情報內容의 複雜性, ④ 會計過程의 隔離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情報傳達過程에서 監査人의 役割은 情報의 目的適合性에 대한 해석과 信賴性 提高를 위한 質을 평가하는 것이다. 經濟的 代理人으로서 監査人은 補償과 동시에 危險을 分擔하여야만 한다.

에이전시理論의 基本的인 모델에 經濟的 代理人인 監査人을 추가한 확장모델의 構成要素와 戰略領域을 決定한 다음 最適行動모델을 설정하였다. 期待效用을 最大化하기 위한 函數關係를 모델화하고 代理均衡의 三重戰略을 모델화하였으며 報告原則이 最適報告函數임을 정의한 후 眞實-推論契約모델을 유도하였다.

에이전시모델은 현실세계를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 하였으며 나아가 實證的 研究結果에 대한 진전이 없다. 좀더 정확하고 現實世界에 접근된 理論을 형성하기 위하여 多數代理人, 多數期間 및 多目的 모델로 研究·改善되어 할 것이다.

대부분의 社會科學 研究가 그렇듯이 에이전시理論이 會計監査理論 定立을 위한 萬能은 아니다. 그러나 會計學의 새로운 研究方法으로써 공헌하였고, 앞으로도 공헌할 것이다. 따라서 에이전시理論의 限界點을 극복하기 위하여 改善方向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研究·分析이 요망된다.

## 參 考 文 獻

1. 盧炳卓, 金台煥, 情報經濟學, 博英社, 1984.
2. 李權洙, 現代會計監査, 法文社, 1987.
3. 李孝翊, 現代會計監査論, 貿易經營社, 1987.
4. 鄭基英, 中級會計, 經文社, 1989.
5. \_\_\_\_\_, 會計規制理論과 展開方向: 企業會計基準의 改定에 부쳐, 經營學研究 제8권 2호(1989.2).
6. \_\_\_\_\_, 財務報告: 會計學의 革命, 經文社, 1986.
7. AAA, A Statement of Basic Auditing Concepts, by Committee On Basic Auditing Concepts, 1973.
8. Antle, R., "The Auditor as an Economic Agene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20, No. 2, (Autumn 1982).
9. Baiman, S., "Agency Research In Mangerial Accounting Research: A Survey,"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1982.
10. Demski, J. S. and G. Felthem, "Economic Incentives and Budgetary Control System," The Accounting Review(April 1978).
11. Demski, J. S., Information Analysis, 2nd ed., (Reading Mass., : Addison-wesley Pudblishing Company, Inc., 1980).

12. ———, "Managerial Incentives," in A. Rappaport.(ed), *Information for Decision Making*(3rd ed., 1982).
13. Evans III, J. H., "Economic Model of auditing in the Accountability Environment," Ph. D Dissertation Carnegie-Mellon University : 1979.
14. Fama, E. F., "Agency Problems and Theory of the Fir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8, No. 2(April 1980).
15. Feltham, G. A., "The value of Information," *The Accounting Review*(October 1968).
16. Harris, N. and Raviv, A., "Optimal Incentive Contrac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Journal of Economic Theory*(April 1979).
17. Hirschleifer, J. and John, G. Riley, "The Analytics of Uncertainty and Information-An Expository Survey," *Th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17, No. 4, (December 1979).
18. Holmstrom, B., "Moral Hazard and Observability,"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Vol. 11, No. 1 (Spring 1980).
19. Lambert, R. A., "Managerial Incentives in Multiperiod Agency Relationship," Ph. 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December 1981).
20. Nalebuff B. J. and Stiglitz, J. E., "Prizes and Incentives : Toward a General Theory of Compensation and Competi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Spring 1983), pp. 21~43.
21. Namazi, M., "Theoretical Developments of Principal Agent Employment Contract in Accounting : The State of Art,"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1985.
22. Rappaport, A., "The Strategic Audit," *Journal of Accountancy*, Vol. 149, No. 6, (June 1980).

## A Study on the Agency Theory and Accounting

Hae-Young, Kong

### [Résumé]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agency research in the game theory lies in the maintenance of Pareto is optimal condition for the optimal incentive contract. The basic concepts which are related to this objective are reviewed in connection with the general assumptions to model it; the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which arose from the information asymmetry, and finally the problem of risk distribution.

The demand for auditing and the role of auditor have been addressed by ASOBAC.

Issues which an auditor is explicitly introduced in a principal-agent framework have been addressed in this paper. These issues must be confronted to appropriately with the auditor, and to achieve an adequate understanding of optimal contracting arrangement with the auditor.

The first step in introducing an auditor into this analysis is to examine the game-theoretic foundation of such an expanded agency model. The mathematical program formulated may not yield solution that are reasonable. This arises because the program may call for the auditor and manager to play dominated Nash equilibria in some subgame. The nontrivial nature of the subgame implies that randomized strategies by the auditor and manager may be of crucial importance.

The possibilities for overcoming the randomized strategy problem were suggested; change the rule of the game and or impose convexity condition. The former seems unjustifiable in an auditing context, and the latter promising but difficult to achieve. The discussion ended with an extension of the revelation principle to the owner manager-auditor game, assuming strategies.

An examination of the restric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basic concept of agency theory was addressed in the later part of this paper. Many important aspects of auditor incentives are inherently multiple-agent, multiple-period, multiple-objective phenomena and require further analyses and researches.